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126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1월 2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11.02. ~ 2023.11.15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송성준	1983.00.03.	0178200274100004894	₩6,637,500	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9 가길
2	홍승혁	1976.00.25.	0178200274100004286	₩4,035,000	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97 번길
3	이정훈	1973.00.17.	0178200274100008825 0178200274100003296 0178200274100008871	₩2,752,000 ₩135,000 ₩4,335,000	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7 길
4	정훈기	1974.00.08.	0178200274100004285	₩6,456,000	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4 번길
5	이종호	1992.00.24.	0178200274100004281	₩4,842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5 번길
6	장완욱	1989.00.06.	0178200274100005924	₩31,860,000	충남 서산시 쌍연남 1로
7	한현수	1980.00.09.	0178220274100001357	₩1,797,000	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
8	안민수	1981.00.27.	0178200274100004089	₩31,860,000	충남 서산시 성왕산길
9	백승훈	1987.00.31.	0178230274100000683	₩31,860,000	충남 서산시 충의로
10	정대진	1964.00.10.	0178200274100004934	₩31,860,000	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31 길
11	최홍식	1980.00.25.	0178200274100008973 0178200274100008798	₩5,482,500 ₩5,617,500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 9 길
12	오정훈	1971.00.28.	0178200274100002875	₩29,700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0 길
13	김성수	1983.00.01.	0178200274100004279 0178200274100003297	₩3,268,000 ₩270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 5 길
14	김인선	1965.00.20.	0178230274100002714	₩3,862,500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주식회사 수퍼블리	110111-6409323	0178230274100003944	₩300,000	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, 3층 C-6호
16	박수영	1969.00.03.	0178230274100002129	₩2,935,000	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
17	박병주	1967.00.10.	0178230274100001172	₩1,940,400	전북 익산시 고봉로 34길
18	주식회사 엘제이스트	160111-0382799	0178200274100003298	₩2,732,000	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77, 지하 1층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